광명시 교통약자 이동편의시설의 사전·사후 점검에 관한 조례

제정 2018. 12. 21 조례 제2435호 일부개정 2019. 9. 27 조례 제2535호

- 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「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」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동편의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는 대상시설 중 광명시에 설치되는 시설에 대해 사전·사후 점검 및 관리를 통하여 교통약자(交通弱者)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교통약자의 사회 참여와 복지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.
- 제2조(정의)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는 「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」(이하 "법"이라 한다) 제2조에 따르며, 그 밖의 용어는 다음과 같다. 〈개정 2019. 9. 27〉
 - 1. "사전점검"이란 법 제9조에 따른 이동편의시설의 설치 대상(이하 "대상시설"이라 한다)에 이동편의시설의 설치가 완료되기 전이나 대상시설의 공사허가나 신고 시 설계도면 또는 현장점검을 통하여 이동편의시설이 법 제 10조에 따른 설치기준에 맞게 설치되었는지 검사하는 것을 말한다.
 - 2. "사후점검"이란 이미 설치된 시설물에 대하여 이동편의시설이 법 제10조에 따른 설치기준에 맞게 유지·관리되는지 점검하는 것을 말한다.
- 제3조(시장의 책무) 광명시장(이하 "시장"이라 한다)은 교통약자의 편익을 위하여 이동편의시설의 설치에 필요한 설비 및 기술지원 등에 대한 시책을 수립·시행하여야 한다.
- 제4조(예산의 확보) 시장은 이동편의시설의 설치와 사전·사후점검 및 현장조사·연구·교육·홍보를 위하여 필요한 예산의 확보에 노력하여야 한다.
- 제5조(이동편의시설 설치비용의 지원) ① 법 제9조에 따른 대상시설이 아닌 시설의 시설주가 이동편의시설을 설치하고자 할 경우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설치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.

- ② 시장은 교통약자의 편의와 안전을 위하여 법 제9조에 따라 의무적으로 설치하는 이동편의시설에 대하여 「국가표준기본법」 등이 정하는 국가표준이 있는 경우에 이를 우선 적용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.
- 제6조(이동편의시설에 대한 점검 및 결과반영) ① 시장은 이동편의시설의 설치 및 설치된 이동편의시설의 적합성 여부를 점검하여야 한다.
 - ② 점검대상 시설은 법 제9조에 따라 이동편의시설의 설치 대상으로 규정된 시설로 한다.
 - ③ 사전점검 시기는 이동편의시설을 설치할 의무가 있는 대상시설의 면허, 허가, 인가 및 도로사용 개시 전에 실시되어야 한다.
 - ④ 시장은 보고서를 제출받은 후 지체 없이 그 내용을 관련기관에게 통보하여 점검결과를 적극적으로 반영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.
 - ⑤ 시장은 점검결과를 반영하거나 보고서의 내용을 검토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관계기관과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듣거나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.
- 제7조(점검요원의 구성)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임명·위촉하여 점검반을 구성한다. 이 경우 점검반에는 점검대상 시설에 의무적으로 설치하여야 하는 이동편의시설을 이용하는 장애인의 유형별로 1명 이상이 포함되어야 한다.
 - 1. 광명시 소속 공무원 1명
 - 2. 「장애인복지법 시행령」제2조에 따른 장애인 등 1명
 - ② 점검요원의 업무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.
 - 1. 제8조에 따른 현장조사 및 사전·사후점검 업무
 - 2. 점검 결과보고서(이하 "보고서"라 한다) 작성
 - ③ 점검요원은 제2항에 따른 업무 수행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.
 - 1. 점검요원은 점검결과를 이 조례가 정한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.
 - 2. 점검요원은 본인과 이해관계가 있거나 공정을 기할 수 없는 사유가 있는 경우 그 해당 시설에 관한 현장조사, 점검, 확인 등의 활동에 참여할 수

없다.

- 제8조(관계 공무원의 의무) ① 관계 공무원은 교통사업자 또는 도로관리청에 점검의 취지를 통보하고, 점검에 협조하도록 지도하여야 한다.
 - ② 관계 공무원이 이동편의시설을 점검할 경우 점검요원과 함께 점검 할 수 있다.
- 제9조(점검결과의 보고) ① 점검요원은 점검을 실시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점 검에 참여한 점검요원 전원의 서명을 받은 보고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 하여야 한다.
 - ② 제1항에 따라 보고서를 작성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시장의 승인을 얻어 보고서의 제출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.
- 제10조(시행규칙)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.

부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부칙〈2019. 9. 27 조례 제2535호〉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